

2021.1.20.~1.29. / 10일간

제32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의안명	심사결과
장성군 폐농약의 수집·처리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	수정가결
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·처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1. 1. 10.
- 제 안 자 : 차상현 의원 대표발의
- 제안이유
 -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·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수집·처리 교육 및 홍보(안 제4조)
 - 수집함 설치 등(안 제5조)
 - 폐농약 배출시 준수사항(안 제6조)
 - 폐농약 집중수집의 달 운영(안 제7조)
 - 폐농약의 수거·처리(안 제8조)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1. 1. 10.
- 제 안 자 : 김희식 의원 대표발의
- 제안이유
 - 웰다잉(Well-Dying)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■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 ~ 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계획수립 등(안 제4조)
-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(안 제5조)
- 임종준비교육 등(안 제6조)
- 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(안 제7조)
- 지원 등(안 제8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9조)
- 호스피스와 날(안 제10조)
- 비밀의 유지(안 제11조)
- 시행규칙(안 제12조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제출일자 : 2021. 1. 10.

■ 제 안 자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)

■ 제안이유

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0.7.2.)에 따라용어의 정의, 위임사항 등을 수정·보완하고 정부정책,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상품권 초과 환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

■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상위법에 따른 조례 용어 수정·보완
 - 다른 ‘법령’과의 관계를 다른 ‘조례’와의 관계로 수정(안 제3조)
 - 가맹점의 ‘지정’을 ‘등록’으로 변경(안 제6조, 제8조)
 - 판매대행점 ‘계약’을 ‘협약’으로 변경(안 제9조)

- 상위법에서 조례 필수 위임 사항 반영
 - (발행) 상품권 종류·권면금액·기재사항, 잔액 환급 등(안 제4조, 제5조)
 - (가맹점) 등록기준, 제한업종, 등록취소 사실 정보공개 등(안 제6 ~ 제8조)
 - (판매대행점) 판매대행점 협약체결 및 정보공개, 준수사항(안 제9조, 10조)
- 상품권 환전 한도 예외조항 신설(안 제15조 4항)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

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4조제4항의 단서조항 “다만,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.” 를 삭제
- 제15조제4항의 “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” 를 “1억원 범위 내에서” 로 수정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장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. <u>다만,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.</u>	<삭 제>
제15조(대금의 지급)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,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를 초과한 잔여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<u>장성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</u> 추가 환전 할 수 있다.	제15조(대금의 지급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1억원 범위 내에서----- -----.

4.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1. 1. 10.
- 제 안 자 : 장성군수(산림편백과)
- 제안이유
 - 장성군 축령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- 목적, 명칭 및 위치, 정의(안 제1조~제3조)
 - 수탁자 : 휴양타운 관리·위탁 받은 자
 - 휴양타운 시설 : 숙박시설 5동, 부대시설(관리실, 근린생활시설) 1동
 -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(안 제4조)
 - 위탁의 범위 : 휴양타운 전부
 - 운영·관리비용 : 수탁자 부담
 - 수탁자의 사용료, 사용기간(안 제5조~제7조)
 - 사 용 료 : 재산평정가격의 연 1,000분의 10이상
 - 사용기간 : 5년 이내, 1회 갱신 가능
 - 수탁자의 자격 (안 제8조)
 - 공모 참가자격 : 관내 거주자 중
 - 1) 자연휴양림 운영 가능자
 - 가)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
 - 나) 산림조합, 한국산림복지진흥원
 - 다) 독립가,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의 법인·단체
 - 2) 숙박시설 경력 5년 이상자
 - 공모 기간 : 14일 이내

- 수탁자의 의무, 행위제한 사항 및 계약 취소사항(안 제9조~제11조)
 - 수탁자의 의무 : 시설물 유지관리, 휴양타운 운영 활성화 등
 - 행위제한 : 제3자에게 관리·운영 전대, 목적 외 사용
 - 취 소 : 목적 외 사용, 조례 또는 계약 위반 등
- 보험가입, 지도·감독(안 제12조~제14조)
 - 손해배상, 손해보험가입, 수탁자에 대한 조사 및 검사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

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2조(명칭 및 위치) 명칭은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(이하 “휴양타운”이라 한다)이라 하고 장성군 서삼면 “모암리 산96”을 “모암길 153-83”로 수정
- 제8조(수탁자 자격 등) ① “수탁자는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 단, 수탁참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”를 “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 다만, 휴양타운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.”로 수정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2조(명칭 및 위치) 명칭은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(이하 “휴양타운”이라 한다)이라 하고 장성군 서삼면 <u>모암리 산96</u> 일원에 둔다.	제2조(명칭 및 위치) ----- ----- ----- 모암길 153-83 -----.
제8조(수탁자 자격 등) ① <u>수탁자는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 단, 수탁참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로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</u>	제8조(수탁자 자격 등) ① 군수는 제 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휴양타운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.

5.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1. 1. 10.
- 제 안 자 : 장성군수(맑은물관리사업소)
- 제안이유
 -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체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정비(안 제2조)
 - (현행)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이내, 50미터 이내
 - (개정)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, 직선거리 50미터 이내
 - 가산금 부과기준 세분화(안 제32조제1항)
 -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 마련
 - (현행) 가산금 = 연체요금 × 3%
 - (개정) 1개월 초과 가산금 = 연체요금 × 3%
 - 1개월 이내 가산금 = 연체요금 × 3% × (연체일수/월력일수)
 -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 규정 신설(안 제32조의2, 제32조의3)
 - 과오납 사용료의 소멸시효 및 환급절차 규정 마련
 - (신설) 소멸시효 : 사용료 및 수수료 3년(민법 제163조)
그 외 징수금 5년(지방재정법 제82조)
 - (신설)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규정 신설
 -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기준 마련(안 제33조제2항)
 -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의 합리적 기준 마련(지방자치법 규정 준수)
 - (신설)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: 60일 이내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